

고 시

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2-4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2월 31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처분대상 : (주)공일공소프트
2. 처분내용 :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(주)공일공소프트 :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(이용자 보호)에 따른 시정 명령(보증보험증권 갱신)을 이행하지 않음
4. 처분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(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)
5. 처분일자 : 2012. 12. 31.